

예산총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0,515,389	13,815,462
일반회계	426,962,425	12,808,873
특별회계	33,552,964	1,006,589
공기업특별회계	7,064,608	211,938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7,064,608	211,938
기타특별회계	26,488,356	794,65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91,057	23,732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50,066	34,50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80,119	20,404
수질개선 특별회계	9,168,137	275,044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5,654,081	169,62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44,275	73,32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467,33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29,59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